

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16호서식] <개정 2025. 10. 23.>

☐ 먹는해양심층수

☐ 해양심층수처리수

☐ 제조업

☐ 수입업

☐ 유통전문판매업

☐ 허가신청서

☐ 등록신청서

☐ 신고서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일자	처리기간 허가·등록신청: 20일 신고: 7일
신청인 (신고인)	법인 또는 기관명		
	성명(대표자)	생년월일	
	주소	(전화번호:)	
상호		영업의 종류	
시설의 소재지			
수입처			
제품명			

「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제1항 전단, 같은 조 제2항 전단, 같은 조 제5항 전단, 제36조의2제1항 전단, 같은 조 제2항 전단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및 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(신고)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(신고인)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귀하

첨부서류	먹는해양심층수 및 해양심층수처리수 제조업 허가의 경우	1. 제조시설 및 설비명세서(평면도를 포함합니다) 2. 제조공정설명서 3. 취수해역 및 해양심층수 취수예정량 또는 구입예정량을 기재한 서류	수수료 없음
	먹는해양심층수 및 해양심층수처리수 수입업 등록의 경우	1. 사업계획서(수입 상대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) 2. 보관시설 명세서	
	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의 경우	1. 사업계획서(제조자의 사업계획서를 포함합니다) 2. 보관시설명세서(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21조제5호나목3)에 따 른 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의 경우에는 해당 영업신고증 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)	

처리절차

이 신청서(신고서)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